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보수 신탁제도 도입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05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보수 신탁제도 도입	4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7.

다. 회 부 일 : 2025.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비율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K-pop 아이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아역배우나 모델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키즈플루언서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활동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부 미성년 아이돌이나 키즈플루언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개인 재산처럼 소비하거나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부 아역배우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역배우 재키 쿠킨(Jackie Coogan)의 사례를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들 명의의 신탁계좌에 총수입의 15%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청소년 연예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에 신탁계좌의 개설 및 보수의 예치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신탁계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탁제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 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신탁예치금을 신탁계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 등이 학업이나 의료 목적 외로 신탁예치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
- 바. 친권자 등이 신탁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보수 신탁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 중 일부를 신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업이나 의료 등의 용도 외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2 등).
- 신탁계좌 입금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와 신탁계좌예치금을 사용한 친권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신탁계좌”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u>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신설>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제25
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신고된 계좌
를 말한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

-----, 이 경우 청소년 대
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신탁계좌의
개설 및 보수의 예치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용역 보수 및 신약 등) ① 청소
 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친권자등”
 이라 한다)은 대중문화예술용
 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종전
에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친권자등은 청소년 대중문
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탁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중문화예술사업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
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
는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
00분의 15 이상을 제1항에 따
른 신탁계좌에 예치(이하 “신탁
예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
다. 다만, 친권자등이 신탁계좌
의 개설 및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친권자등은 신탁예치금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

<신 설>

<신 설>

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업이나 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신탁계좌의 신고 및 운영, 수탁기관의 지정, 신탁예치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탁계좌의 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친권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4(신탁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신탁제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등
2.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예치금을 신탁계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예치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5조의3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4. ~ 6. (생략) ③·④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는 대부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데,¹⁾ 부모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 제25조²⁾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독자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를 부모 등이 지급받아 관리하는 비율이 48.7%인 것으로 조사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배현진 “사랑했던 배우 故 김새론…아역배우 소득 보호해야”, 이데일리 2025.3.5.자 등 기사 참조).

2)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①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본인의 용역제공 대가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계좌에 입금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업이나 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됨.³⁾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민법」 제5조, 제916조 및 제920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의 관리·처분권한 등 법령 간 충돌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둘째, 금전을 의무적으로 신탁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아닌지, 반드시 신탁을 통해서만 정

3)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1939년 제정된 「아동 연기자 보호 헌장 (California Child Actor's Bill)」에서는 부모가 미성년 연기자의 출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입의 15%를 신탁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미성년 연기자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도록 하고 있음(일명 「쿠건법(Coogan's Act)」).

책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탁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신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위험자산투자 등으로 원금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과 같은 제도 도입 시에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의 자격, 의무, 자산운용방법 등을 엄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음.⁴⁾

○ 이에 대하여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및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친권자 등 사이의 문제를 사

4) 「저작권법」 제105조에서부터 제111조까지에서 권리신탁단체의 허가, 의무,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업자가 책임지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는 사업자의 귀책 없이 법정신탁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벌칙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국방송협회**에서는 금융기관과 연계된 실무 시스템 부재로 인한 행정 부담, 계좌정보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다양한 계약 형태와 플랫폼의 복잡성 등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친권자 등의 강한 요구로 신탁예치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사업자가 예외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개정안의 사업자 처벌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제출하였음.

- **종합하면**, 개정안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 보장 및 법정대리인과의 분쟁 방지 등 법 개정의 기대효과와 함께 「민법」 제5조, 제916조 및 제920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의 관리·처분 권한⁵⁾ 및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충돌 문제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협회 등의 신중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2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825호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094호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용역보수 신탁 관련 해외사례

국가(주)		규정 주요내용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연기자 보호 헌장」 캘리포니아의 부모는 '쿠건 계좌'를 개설해야하며, 모든 미성년자는 수입의 15%를 쿠건 계좌라는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함
	뉴욕	뉴욕의 부모는 UTMA 또는 UGMA 규정(수탁형 계좌)을 준수하는 신탁계좌를 개설해야함
	일리노이	- 일리노이에서 일하는 자녀의 부모는 Blocked Trust Account(차단된 신탁계좌)를 개설해야하며, 자녀 수입의 15%이상을 계좌에 입금해야함 [참고] 아동노동법 개정 법안(2023) - 부모는 자녀가 소셜 미디어 영상에 등장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콘텐츠 수익의 50%를 자녀를 위한 신탁기금에 따로 보관해야 함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수익화된 소셜 미디어 영상에 등장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루이지애나 / 뉴멕시코	- 루이지애나의 부모는 모든 주, 모든 은행에서 Blocked Trust Account를 개설해야함 - 뉴멕시코의 부모는 자녀가 각 고용계약 당 \$1000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Blocked Trust Account를 개설해야함
	※ 출처 : 미국의 주별 청소년 보수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 관련 규정_Sag Aftra 발췌	
프랑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16세 미만 아동보호 법안(2020)」 ○ 보수 신탁 관련 조항 - 자녀가 받는 보수의 일부는 법적 대리인에게 맡겨질 수 있음 - 잉여금은 퇴직연금기관(Caisse des Dpts et Consignations)에 입금되고,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독립할 때까지 이 기금에서 관리됨. 긴급상황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될 수 있음

참고2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연합	• 신탁계좌의 개설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탁계좌의 개설의무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친권자 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동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친권자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 아님. -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친권자 등 사이의 문제를 사업자가 책임지게되는 이상한 형태의 법안이 되는 구조로, 양자간 다툼을 사업자가 조율해야 한다는 모순 발생 우려 - 또한, 사업자의 의무는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신탁계좌에 입금하게 되는 것이 친권자 등의 의사와 반하는 경우, 사적재산의 강제라는 민법의 기본원칙도 위배하는 것임 - 15%의 신탁계좌 보전의 의미가 소수로 발생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친권자 등 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제정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85%의 금액에 대하여는 보전의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15%를 정해둔 의미가 없어 보임 - 동 개정법률안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상 충분히 준용할 법리가 존재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주의로 사료됨 -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생계 등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 차원이라면, 법률의 개정이 아닌 이들의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는 재활기구와 교육센터 운영 또는 기금운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임
한국 음악콘텐츠 협회	• 법정대리인이 사업자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밖에 법정대리인이 입금에 비협조하는 경우, 장래의 정산금 채권이 압류당한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 없이 법정신탁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벌칙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한국방송협회	• 계좌개설의 주체와 실무 주체 간의 불일치 문제 - 법정신탁계좌 개설은 친권자 등이 해야 하지만, 신탁여부를 확인하고 예치해야 하는 주체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임 - 따라서, 출연 전 급하게 계약이 체결되거나 해외거주자일 경우 실제 계약 단계에서 친권자의 계좌 개설 여부 확인이 어려움 • 금융기관과 연계된 실무 시스템 부재로 인한 행정 부담 - 현행 문체부와 연동된 '법정신탁계좌 인증 시스템' 등이 구축되지 않아 계좌개설 여부, 예치금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따라서 수작업으로 확인·기록해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 부담 발생 - 예치금 누락, 계좌 정보 불일치 시 책임소재가 사업자와 친권자 등 간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

	• 계좌정보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 미성년자 명의 계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방송사나 제작사가 이를 요청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 발생 가능 • 다양한 계약 형태와 플랫폼의 복잡성 - 드라마, 예능, CF, OTT 등 프로그램에 따라 계약 구조가 매우 다층적(고정 출연, 회차별 계약, 협찬 출연, 소속사 대리계약 등)인바, 실무상 모든 유형에 일괄적으로 신탁계좌 예치를 적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계약구저에 따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상존함 • 형사처벌의 과도성 및 법체계 충돌 가능성 - 보수의 15%를 법정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과도함. 이로 인해 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기피하게되고 출연을 원하는 청소년의 활동기회가 줄어드는 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음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민사절차를 통해 친권자 등에 용역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최후 수단성에 반함 - 나아가 해당 조항이 악용될 경우, 이를 근거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일반 대중문화예술인에 비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신탁계좌는 친권자 등에게 개설 및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벌칙은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친권자 등 사이의 문제를 사업자가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하는 실정임 - 사업자의 책임은 계약 상 용역보수 또는 정산금 지급의무에 따라 입금하면 되는 것인데,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친권자 등이 허위로 계좌정보를 주는 경우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탁계좌의 개설 및 신고 의무 또한 사업자가 결국 지게됨 • 신탁계좌 입금액 관련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15%에 대하여 오히려 85%의 큰 비용에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친권자 등의 강한 요구로 신탁예치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사업자가 예외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우려 - 이 경우, 친권자 등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업자는 형사처벌에 노출됨 - 위와 같은 상황은 사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측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소속사를 공격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자의 형사처벌 예외규정을 추가하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측도 사업자에게 법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보완해줄 것